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강제력 행사권 부여와 의료 소송시 국가의 원고 지원에 대한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년 7월 27일

청 원 인

성 명 : 김채은

주 소 : 충북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충북청주시
	성명 : 김채은
건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강제력 행사권 부여와 의료 소송시 국가의 원고 지원
소개년월일	2012년 7월 27일

소개의견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법인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의료분쟁조정법)이 대한의사협회가 1988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후 23년 만인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그 동안 진행된 의료소송은 환자 측에서 의료과오를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의료정보의 독점성 때문에 승소율이 60%대에 머물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의료행위와 정보의 전문성과 접근성 때문에 현실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환자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의사특혜법이며 환자들의 피해구제 실익과 실효성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도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환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자 간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조정의 단계에서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원고를 국가에서 보조 해주어야 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강제력을 부여하여 의료분쟁 조정에 비협조적인 의료진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려 이 입법청원을 상정한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법인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과오 입증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의료진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영어로 휘갈겨 쓴 의료용어 때문에 변안조차 힘들어 소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으로 넘어갔을 경우 일반인이 의료과오를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승소율이 60%가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 소송 절차 진행과정에서 국가는 원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력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에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한다.

2. 주요골자

1. 의료 소송 절차 진행과정에서 국가는 원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에 강제력을 부여한다.

현행	개정문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반드시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신설> 국가는 불가피한 의료소송을 하는 원고에게 지원을 해 줄 의무를 가진다. (단,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인 성명 : 김채은
청원인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408동 1905호
청원인 전화번호 : 010-2690-4541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